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회)	

자살예방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4(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자살유발정보 모니
터링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의 방법 규정
(안 제12조제4항, 제12조제5항)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 결과 제출의
방법 규정
(안 제12조제6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제12조제5항, 제1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④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실시해야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이하 “자살유발정보”라 한다)의 삭제 또는 차단
 2. 이용자의 자살유발정보 검색이나 이용자 간 송수신을 제한하는 조치
- ⑤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한한다.
-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19조의4 제2항의 조치에 관하여 그 조치 결과를 익월의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의무자의 범위) ① 법 제19조의 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긴급구조기관에 신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12조(<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u>)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긴급구조기관에 신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u>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실시해야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u> <u>1. 법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이하 “자살유발정보”라 한다)의 삭제 또는 차단</u>

2. 이용자의 자살유발정보 검색
이나 이용자 간 송수신을 제한
하는 조치

⑤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
는 정보에 한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19조의4 제2항의 조치에 관하
여 그 조치 결과를 익월의 말일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899